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34

제출연월일 : 2015. 4. .
제 출 자 :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을 동별로 운영하여 지역복지 문제를 동단위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사랑과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해촉(안 제2조 ~ 제4조)

다. 위원의 직무 및 의무(안 제5조 ~ 제6조)

라. 회의 및 교육, 수당 등(안 제7조 ~ 제8조)

3.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예산담당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 미반영

- 현재 위촉되어 있는 복지위원의 성별 균형이 맞지 않음(여성이 많음). 향후 새로 복지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촉.

라. 입법예고 : 2015. 3. 2. ~ 2015. 3. 23.(의견 없었음)

6. 관련되는 법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3조(임기)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3년 임기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제5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4.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된 때

제5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생계곤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제6조(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회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한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75회-본회의제2차부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A울산중구012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복지지원과		
	담당자명	곽태현	전화번호	052-290-4492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지역복지 문제를 동단위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사랑과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복지위원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복지 문제를 동단위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위원의 구성 조항을 정비할 필요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복지지원과)	**복지위원 위촉시 어느 한 성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이번 조례에는 어느 한 성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 내용에 규정하지는 않음.**			

2015년 03월 05일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지원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관련되는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34)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 제출연월일 : 2015. 4. 07.(화)
-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위원회회부 : 2015. 4. 14.(화)
- ❍ 위원회심사 : 2015. 4. 16.(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을 동별로 운영하여 지역복지 문제를 동단위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사랑과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해촉(안 제2조～제4조)
- ❍ 위원의 직무 및 의무(안 제5조～제6조)
- ❍ 회의 및 교육, 수당 등(안 제7조～제8조)

4.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기호)

❍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제3항에 따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복지위원의 구성, 임기, 위촉해제, 직무, 회의 및 교육, 수당과 부칙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 복지위원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